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

제정 1999. 8. 28.	개정 2000. 2. 29.
개정 2001. 2. 23.	개정 2001. 11. 8.
개정 2002. 2. 18.	개정 2002. 10. 16.
개정 2003. 9. 2.	개정 2005. 4. 11.
개정 2005. 7. 12.	개정 2006. 2. 28.
개정 2009. 11. 6.	개정 2009. 11. 9.
개정 2010. 2. 8.	개정 2011. 1. 26.
개정 2012. 4. 19.	개정 2012. 6. 21.
개정 2013. 1. 15.	개정 2013. 8. 22.
개정 2014. 11. 11.	개정 2016. 5. 4.
개정 2020. 5. 27.	개정 2020. 8.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 학칙(이하“학칙”이라한다) 제43조에 따라 교육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한다)의 학사 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4. 19)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1. 6, 2012. 4. 19)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행정실장과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9. 11. 6, 2013. 1. 15)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1. 6)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 1. 26)

제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 학

제5조(전형시기 및 방법) ①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 등은 모집요강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9. 11. 6)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공별 모집정원) 각 전공별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1. 6)

제7조(입학지원 서류)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모집요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6)

제8조(일반전형) ① 대학원 입학시험은 전공별로 필기시험 또는 구술(면접)시험으로 하며, 실기가 필요한 전공은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11. 6, 2012. 4. 19)

② 대학원장은 입학시험의 전형위원을 각 전공별로 임명한다. (개정 2009. 11. 6)

③ 전공시험의 필기시험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응용능력 및 판단력을 평가한다.(신설 2009. 11. 6)(개정 2012. 4. 19)

④ 구술(면접)고사는 전공주임 교수가 주관하며, 평균 60/10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09. 11. 6)

제9조(특별전형) ① 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② 특별전형 비율·대상자의 자격기준·전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발표 한다.(개정 2009. 11. 6, 2012. 4. 19)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
(개정 2009. 11. 6, 2011. 1. 26, 2016. 5. 4.)

1. 삭 제(개정 2012. 4. 19, 개정 2016. 5. 4.)\

2. 삭 제(개정 2016. 5. 4.)

3. 삭 제(개정 2016. 5. 4.)

4. 삭 제 (개정 2011. 1. 26, 2012. 4. 19, 2016. 5. 4.)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개정 2016. 5. 4.)

③ 학칙 제33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이 무논문 석사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료후 등록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4.)

제4장 교육과정

제12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교과목 및 세미나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AI융합 교육전공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목, 선택과목, 현장연구 및 세미나로 구분하여 편성한다.(개정 2009. 11. 6, 2009. 11. 9, 2010. 2. 8, 2020. 5. 27.)

② 전공교과목은 교과교육영역 교과목과 교과내용영역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09. 11. 6)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수학점) ① 교과목당 이수학점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미나는 1학점 단위로 한다. (개정 2000. 2. 29, 2009. 11. 6, 2009. 11. 9, 2010. 2. 8)

② 논문제 또는 무논문제의 선택은 2학기 중에 한다. 다만, 전공주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4. 11, 2009. 11. 6, 2009. 11. 9, 2010. 2. 8, 2012. 4. 19, 2013. 8. 22, 2016. 5. 4, 2020. 5. 27.)

구분 전공	과목	전 공 교 과 목		기초공통 과목	선택과목	현장연구	세미나	계
		교과교육 영역	교과내용 영역					
AI융합교육 전공외 전공	논문제	6-12	12-18				2	26
	비논문제	6-12	12-24				2	32
AI융합교육 전공	논문제			9이상	9~12	6~9	2	26
	비논문제			9이상	12~15	6~9	2	32

제14조(개설교과목) ① 전공 주임교수는 전공별 교육과정에 의하여 매 학기 개설교과목을 학기 개시 60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공고한다. (개정 2009. 11. 6)

② 각 전공별 제출한 개설 교과목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이를 조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2009. 11. 6)

③ 개설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기준 등의 심의를 거쳐 비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2. 23, 2009. 11. 6, 2014. 11. 11)

④ 전임교원이 매 학기마다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세미나를 제외한 2개 교과목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10. 2. 8)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⑥ 교과목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9)

⑦ 세미나 I 은 4학기, 세미나 II는 5학기에 개설한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2010. 2. 8)

제15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 개설교과목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② 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선수교과목 및 세미나 학점은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09. 11. 6, 2010. 2. 8, 2012. 4. 19)

③ 다른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얻어 총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이수 학점은 소속 전공의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2. 4. 19)

④ 수료한 사람이 학위 논문을 대신하여 무논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논문 학위 취득신청서(제15조 별지 제1호 서식)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고,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당시 해당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신설 2016. 5. 4.)

제16조(폐강) 교과목 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교과목 전공의 학생수가 3인 미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2. 4. 19)

제17조(선수교과목) ① 대학원 전공과 학부 전공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전공별로 지정한 전공선수교과목 중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재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및 AI융합교육전공은 선수 교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1. 6, 2012. 4. 19, 2020. 5. 27.)

②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 교과목을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총 22학점 이상을 선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2012. 4. 19)

③ 선수교과목은 이 대학교 학과(학부, 전공)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수교과목을 따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제18조(교원자격증 취득) 학칙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원자격증(중등교원 2급 정교사)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1. 전공교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그 중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6)

2. 교직교과목은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교과교육 4학점 이상, 교육실습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교육의 전공교과목은 교직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등의 이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4. 19)

②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입학자 (신설 2009. 11. 6)(개정 2013. 8. 22)

1. 전공교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그 중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과 내용영역 기본이수 교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4. 19)

2. 교직교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그 중에는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등의 이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3. 대학원의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하여 인정받은 과목이나 성적표에 기재 되지 않은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신설 2013. 8. 22)

1. 전공교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그 중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기본이수 교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6학점(2과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직교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그 중에는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등의 이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3. 대학원의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하여 인정받은 과목이나 성적표에 기재 되지 않은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한다.

제18조의2(교직 적성.인성검사) 학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 8. 22)

1.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부전공 학생 포함)(신설 2013. 8. 22)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부전공 학생 포함)(신설 2013. 8. 22)

제19조(교육실습 운영) ① 삭제(2003. 9. 2)

② 교육실습은 4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 제1학기에 실시하며, 교육실습에 따른 소요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2013. 1. 15)

③ 교육실습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9. 2)

④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11. 6)

제20조(부전공 자격표시)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 포함)가 교육대학원 재

학 중 다음 기준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으면 교원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교원 자격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6, 2011. 1. 26, 2012. 4. 19)

1. 2004년 3월 이전 입학자 : 전공교과목 24학점(기본이수 영역별 이수교과목 14학점 및 교과교육 관련 과목 포함)

2. 2004년 8월 이후 입학자 : 전공교과목 24학점(기본이수 영역별 14학점 포함) 및 교과교육 관련 교과목 4학점 이상

3.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입학자 (개정 2013. 8. 22)

가. 전공교과목 : 30학점 이상[교과내용영역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나.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4.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신설 2013. 8. 22)

가. 전공교과목 : 30학점 이상[교과내용영역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나. (삭제 2020. 8. 31.)

다.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제21조(학점의 교류 및 인정) ① 학칙 제27조에 의하여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중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③ (삭제 2009. 11. 6)

제22조(전공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6)

제23조(재 이수) 이미 이수한 교과목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는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교과목의 전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 이수한 성적이 이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

제24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시험,과제,실험과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적평가를 위해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기말시험)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2. 4. 19)

③ 실험과 연구보고서는 기말시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④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12. 4. 19)

제5장 지도교수·논문지도위원회

제25조(지도교수) ① 각 전공별로 학년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년 지도교수는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1. 6)

② 전공주임 교수는 2개 학기 이상을 이수중인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 15)

④ 논문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매 학년마다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⑤ 논문지도교수는 재학 중에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제2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해서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공주임교수와 협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2인 이상으로 논문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 15)

제27조(학위취득자격시험) ① 학위취득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어 시험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② 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하여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③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등급이 B⁺ 이상인 경우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2012. 4. 19)

④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 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제28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1. 6)

제29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2, 2009. 11. 6)

②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공인 인증기관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는 TOEFL, TOEIC, TEPS, NEAT 1급, 중국어는 HSK, 일본어는 JPT, 한문은 한자 능력검정(자격검정, 급수자격검정, 능력자격검정)으로 기준 점수 또는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으로 인정 한다. (개정 2009. 11. 6, 2013. 8. 22)

③ 공인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 또는 기준 등급은 관련전공과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6)

제30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각 전공별로 논문제는 3과목, 무논문제는 5과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11. 9, 2010. 2. 8, 2016. 5. 4.)

②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1조(재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재응시하여야 하며, 외국어 시험의 경우 지정된 다른 교과목의 시험으로도 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2012. 4. 19)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32조(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제출기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출기한을 경과한 사람이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제34조(논문작성계획서) 논문작성계획서는 3개학기 이후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09. 11. 9)

제35조(논문중간보고서) 논문중간보고서는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1개 학기 후부터 논문공개발표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6, 2012. 4. 19)

제36조(논문 공개발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논문초록을 공개발표하고, 주임교수는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출방법 및 시기) ① 학위청구 논문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한 논문 4부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 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하며, 대학원장은 학위청구 논문 제출기간, 논문심사료,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을 1월과 7월에 확정·공고한다.

제38조(논문 작성) ① 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 작성 체제 및 규격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위청구 논문의 작성, 보고, 발표 등에 있어 우리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 1. 26)(개정 2012. 4. 19)

제39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전임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2. 23, 2012. 4. 19)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기간 중에는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1. 6, 2011. 1. 26)

④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 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개정 2009. 11. 6)

제40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가감하여 심사할 수 있다. (2005. 7. 12, 2009. 11. 6)

② 심사위원 개인별 평가는 “가” 또는 “부”로 표기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로 평가하면 논문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9. 11. 6)

③ 심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에게 논문 심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2. 4. 19)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종료 후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심사논문제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한 논문은 학위 수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인쇄본 학위논문 5부와 전자기록물에 학위논문 파일을 저장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

제42조(학위수여) ①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과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5. 4.)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사람

2. 무논문 석사학위 취득을 신청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수료후 등록생으로 6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한 사람을 포함)

②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학위기에 따라 수여한다.

제42조의2(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4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9)

제43조(수료인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제9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44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그 밖에 교내·외장학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 26)

② 장학금 규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순천대학교장학금지급및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5조(연구비)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연구비의 규모, 연구비 보조 대상 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9. 8.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순천대학교교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
2. 순천대학교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

부 칙(2000. 2. 29.)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2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10.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34조, 제42조 및 제43조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의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2개 학기 이하를 수료하고 복학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10.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4항 및 제7항,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개 학기 이하를 수료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의거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부 칙(2011. 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중 교육대학원 관련 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규정 부칙(2009. 11. 9 및 2010. 2. 8) 제2조(경과조치)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개 학기 이하를 수료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는 2010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부 칙(2013.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8.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는 2013년8월 교원자격취득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